

---

# 정 관

---

원본대조필	인
-------	---

주식회사 앤실  
(Anssil Co., Ltd)

제정	0000. 0. 00.
개정	0000. 0. 00.
기타	

## 정 관

###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앤실 (영문명 Anssil Co., Ltd)라고 부른다.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식 튜너등 영상, 음향기기 부품 관련 디자인
2. 고주파 신호발생기 및 증폭기등 통신기기 부품 관련 디자인
3. 첨단 용접설비등 열처리용 기기 관련 디자인
4. 씨에프씨 대체 냉매 냉장고등 가정형 전기기기 관련 디자인
5. 삼파장 이상 형광체등 조명기기 관련 디자인
6.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센서를 이용한 계측,계량기기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디자인
7.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음향 및 결상기기관련 디자인
8. 신호,안전,교통관제 및 정보기기류 관련 제품디자인
9. 초전도 발전기,변압기,케이블관련 디자인
10. 위 관련 제품개발 및 판매
13. 방송, 영상,영상물제작업
14. 소품디자인업
15. 특수분장업
16. 무대설치업
17. 온라인통신판매업
18. 도,소매업
19. 전자상거래업
20. 무역업
21. 광고제작 및 대행업
22. 피피엘
23. 전문디자인업
24. 업체컨설팅업
25. 의류디자인 및 제작업

- 26.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업
- 27. 실내 디자인업
- 28. 실내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업
- 29. 학술연구용역업
- 30.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1. 매트리스제조 및 판매업
  - 1. 가구제조 및 판매업
  - 1. 침구류제조 및 판매업
  - 1. 침구류 디자인업
  - 1. 가구 디자인업
  - 1. 매트리스, 가구, 침구류 유통업
  -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현지법인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nssil.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9 조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할 주식총수의 1/4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한 기타의 사항은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금전 또는 주식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생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때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2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 1 이내로 한다.
- ② 의결권의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소정의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 제 9 조 3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상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 (이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생가액에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 상황 기타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 기간은 연장된다.
    - 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 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따라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해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환에 관한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함)

이나 그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제 9 조 4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본 회사는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는 종류주식 (이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것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3. 전환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 가. 회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나. 특정인 및 그 특수 관계인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라. 보통주식의 주가가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가를 1원 이상 상회하는 경우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7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배정하는 경우
  7.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일반공모증자)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85조의 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 54조의 5 제 4항 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제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가격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 84조의 9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 제 11 조 (주권의 명의개서)

- ①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권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한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주권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권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의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주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의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 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본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월을 경과하

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이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이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및 업무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에 이사회이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 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이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재 10조의 4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및 업무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 4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조, 제 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제 17 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제 18 조 (소집권 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34조 2항의 결정을 준용한다.

- 제 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0 제 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 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 유지 권) ① 주식회사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 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 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 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 29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2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회사는 필요 시 약간 명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회회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 자로 한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제 39 조의 2 (감사)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위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39 조의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 39 조의 4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9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의 5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류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9 조의 6 (감사록)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7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

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계 산

제 40 조 (사업 년도) 이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일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 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 잉여금 처분액

제 43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록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부 칙

### 제 1 조 (내부규정)

본 회사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필요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 2 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와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0000. 0. 0.

주식회사 앤셀

대표이사 송 범 근 인